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38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평트너스

담당변호사 손진홍, 윤주석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3.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고 B에게 48,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의 2019. 1월분 계금 1,500,000원을 대납해주었다.

나. 피고 B는 2019. 6. 20. 조카사위였던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전남 장성군 D 임야 19,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0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23,000,000

3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5,997,128
	합계	178,997,128

라. 한편, 피고 B는 2019. 7.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딸인 F에게 2019.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 E조합, G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대여금 48,500,000원 + 계금 대납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1) 인 2021. 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임야의 처분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디338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 C와 F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이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위 각 계약을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을 별도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20. 기준으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178,997,128원인 사실 및 적극재산은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²⁾,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년경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임야가 1㎡당 4,000원의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아파트 J동

1층 내지 9층 각 759.03㎡

지하층 503.5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동구 H 대 2,7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K호

철근 콘크리트조 59.7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78200분의 2708 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소장 부분 송달일 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